

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※ 「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」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「202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(수시 및 정시)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3.



청주교육대학교

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I. 2028학년도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

모집 시기	전형명(대분류)	전형명	모집인원			비고 (전년 대비)
			정원내	정원외	합계	
수시	대학별 독자적 기준	학생부종합(배움나눔인재전형)	42	-	42	
	고른기회 대상자	학생부종합(지역인재전형)	134	-	134	+2
	고른기회 대상자	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3	-	3	-2
	대학별 독자적 기준	학생부종합(다문화가족자녀전형)	5	-	5	
	농어촌 학생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-	7	7	
	장애인 등 대상자	학생부종합(장애인학생전형)	-	10	10	
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학생부종합(기회균형선발제전형)	-	8	8	
	소계		184	25	209	
정시	일반전형	수능(일반전형)	68	-	68	수시모집 해당전형 미충원시 선발
	농어촌 학생	수능(농어촌학생전형)	-	-	-	
	장애인 등 대상자	수능(장애인학생전형)	-	-	-	
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수능(기회균형선발제전형)	-	-	-	
	소계		68	0	68	
합계			252	25	277	

※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수시모집 정원내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수능(일반전형)으로 이월하여 선발

※ 수시모집 정원외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해당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

II. 수시모집

1. 전형별 지원자격

전형명	지원자격
학생부종합 (배움나눔인재전형)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학생부종합 (지역인재전형)	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(예정)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가능한 자
학생부종합 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○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•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‘국가보훈대상자’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* *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‘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’를 제출한 자
학생부종합 (다문화가족자녀전형)	○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자녀
학생부종합 (농어촌학생전형)	○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•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 지역 소재 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(졸업예정자 포함) • 중학교 입학일부터 중·고교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·어촌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※ 재학 및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이며,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※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‘읍·면’ 지역에서 ‘시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및 광산지역 포함 ※ 부모가 사망·이혼기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※ 읍·면 소재 특수목적 중·고교(과학, 외국어, 예술, 체육 등) 출신자 및 검정 고시 출신자 제외
학생부종합 (장애인학생전형)	○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학생부종합 (기회균형선발제전형)	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2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가. 배움나눔인재전형

모집시기 (전형유형)	구 분 (선발비율)	서류평가		면접고사		전형총점 (기본점수)	비고
	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	
수시 (학생부종합)	일괄합산	1,000	100%	-	-	1,000	면접 미 실시

* 각 전형요소별 기본점수는 0점

나. 지역인재전형

모집시기 (전형유형)	구 분 (선발비율)	서류평가		면접고사		전형총점 (기본점수)
	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
수시 (학생부종합)	1단계 (200%)	600	100%	-		600
	2단계 (100%)	600*	60%	400	40%	1,000

* 2단계 서류평가는 1단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함.

* 각 전형요소별 기본점수는 0점

다. 배움나눔인재전형, 지역인재전형 이외 전형

모집시기 (전형유형)	구 분 (선발비율)	서류평가		면접고사		전형총점 (기본점수)
	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
수시 (학생부종합)	1단계 (300%)	600	100%	-		600
	2단계 (100%)	600*	60%	400	40%	1,000

* 2단계 서류평가는 1단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함.

* 각 전형요소별 기본점수는 0점

3. 최저학력기준

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

4. 학교폭력 조치사항 평가 반영 방법

전형명	평가 반영 방법										
학생부종합(배움나눔인재전형)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수시모집</th></tr><tr><td>1호~3호</td><td>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50점 감점</td></tr><tr><td>4호~5호</td><td>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75점 감점</td></tr><tr><td>6호~7호</td><td>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100점 감점</td></tr><tr><td>8호~9호</td><td>결격</td></tr></table>	구분	수시모집	1호~3호	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50점 감점	4호~5호	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75점 감점	6호~7호	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100점 감점	8호~9호	결격
	구분	수시모집									
	1호~3호	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50점 감점									
	4호~5호	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75점 감점									
	6호~7호	서류평가 점수(표준점수) 100점 감점									
8호~9호	결격										
	※ 각 호수에 따라 최고 100점에서 최저 50점까지 감점 적용하고, 8호~9호는 부적격 처리함										
학생부종합(지역인재전형)	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, 지원할 수 없음										
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										
학생부종합(다문화가족자녀전형)											
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										
학생부종합(장애인학생전형)	1호 ~ 9호 부적격										
학생부종합(기회균형선발제전형)											

5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통	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(해당자)	

6. 서류평가

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정성·종합 평가함

7. 면접고사

가. 배움나눔인재전형 : 미 실시

나. 배움나눔인재전형 이 외 전형

면접기준	교사로서의 적성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
면접방법	• 복수의 면접위원이 종합평가함 • 수험생의 제출서류(학교생활기록부)를 활용함

Ⅲ. 정시모집

1. 전형별 지원 자격

● 공통: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(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, 한국사 5개 영역)에 응시한 자

전형명	지원자격
수능 (일반전형)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수능 (농어촌학생전형)	○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 지역 소재 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 포함) - 중·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·어촌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※ 재학 및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이며,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※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‘읍·면’ 지역에서 ‘시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및 광산지역 포함 ※ 부모가 사망·이혼기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※ 읍·면 소재 특수목적 중·고교(과학, 외국어, 예술, 체육 등)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
수능 (장애인학생전형)	○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수능 (기회균형선발제전형)	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2.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

가. 일반전형

모집 시기 (전형유형)	구 분	수능		면접		전형총점 (기본점수)	비고
		총점	실질반영 비율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	
정시(수능위주) “나” 군	일괄합산	1,000점	100%	-	-	1,000	면접 미 실시

* 각 전형요소별 기본점수는 0점

나. 일반전형 외 전형

모집 시기 (전형유형)	구 분	수능		면접		전형총점 (기본점수)
		총점	실질반영 비율	총점 (기본점수)	실질반영 비율	
정시(수능위주) “나” 군	일괄합산	800	90.9%	200 (120)	9.1%	1,000 (120)

3. 최저학력기준

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

4. 학교폭력 조치사항 평가 반영 방법

전형명	평가 반영 방법										
수능(일반전형)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정시모집</th></tr><tr><td>1호~3호</td><td>총점(표준점수) 50점 감점</td></tr><tr><td>4호~5호</td><td>총점(표준점수) 75점 감점</td></tr><tr><td>6호~7호</td><td>총점(표준점수) 100점 감점</td></tr><tr><td>8호~9호</td><td>결격</td></tr></table>	구분	정시모집	1호~3호	총점(표준점수) 50점 감점	4호~5호	총점(표준점수) 75점 감점	6호~7호	총점(표준점수) 100점 감점	8호~9호	결격
	구분	정시모집									
	1호~3호	총점(표준점수) 50점 감점									
	4호~5호	총점(표준점수) 75점 감점									
	6호~7호	총점(표준점수) 100점 감점									
	8호~9호	결격									
※ 각 호수에 따라 최고 100점에서 최저 50점까지 감점 적용하고, 8호~9호는 부적격 처리함											
수능(농어촌학생전형)	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, 지원할 수 없음										
수능(장애인학생전형)	1호 ~ 9호 부적격										
수능(기회균형선발제전형)											

5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가.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

모집 시기 (전형유형)	구분	국어영역	수학영역	영어영역	탐구영역	한국사	비고
					사회/과학		
정시 (수능위주) “나” 군	반영비율	25	25	25	25	응시 필수 (성적 미반영)	5개 영역에 모두 응시
	점수 활용지표	표준점수	표준점수	등급에 따른 환산점수	표준점수 (2과목 합)		

※ 직업탐구, 제2외국어 및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
※ 특정과목 지정 및 가산 부여 : 해당사항 없음

※ 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가 2과목 미만인 경우 결격 처리됨

나.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

- 일반전형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환산점수	250	240	223	193	150	100	58	28	0

- 일반전형 외 전형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환산점수	200	192	178	154	120	80	46	22	0

6. 면접고사

가. 일반전형 : 면접 미 실시

나. 일반전형 이 외 전형

면접기준	교사로서의 적성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
면접방법	복수의 면접위원이 종합평가함